#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776호

나. 발 의 자 : 이원형 의원(찬성자 12명)

다. 발의일자 : 2023년 5월 30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2023.3.27.)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희망경제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희망경제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희망경제위원회의 폐지(2023.3.27)에 따라 후속 입법 조치로 관련 조항을 삭제(제9조제2항)하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됨.

## 나. 조례안 정비와 위원회 관련 사항 신설의 필요성(안 제9조)

- 서울시는 2013년까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창업강좌 운영, ▶장애인 창업보육센터 운영, ▶장애인 창업 전문 상담실, ▶장애인기업 무장애 시설지원 사업 등의 장애인기업 지원 사업을 시행함.
- 이후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2015.5.14.)하여 장애인기업과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 ▶정보 및 자료제공,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제품전시회·박람회, ▶해외 시장 개척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또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과 지원, ▶공공구매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우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면서 그 기능을 희망
   경제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함1).

<sup>1) 「</sup>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2015.5.14.)

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

-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로 본다.
- 그러나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2023.3.27.)되면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관련 조문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희망경제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
   기업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 1.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지원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는 서울 특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로 본다.	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u>-L</u>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장애인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 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u>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u>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u>해촉을 원할 때</u>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신 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희망경제위원회 폐지의 후속조치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하여 원활한 장애인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 다만, 서울시는 조례 제정 이후 장애인기업지원계획이나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조례의 실행력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계획 마련과 지원사업 추진이 촉구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성찬	02-2180-8061